

環境保全法 解說

이 글은 지난 3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관한 『환경보전관계법설명회』에서 강의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注〉

環境廳 법무 담당관
정 혁 진

1. 환경문제의 대두

자연은 자연을 자연답게 하는 자연나름대로의 순환과정과 파괴에 대한 일정한도의 치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끊임없는 자연의 이용·개발은 이러한 자연의 자체조절기능의 한계 (Tolerance)에 영향을 미치며 더우기 20세기에 이르러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활동의 확대는 자연의 이용·개발의 범위를 넘어 파괴에로 이르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인간의 환경파괴행위는 우리인간의 생활터전마저 위태로운 서식처로 변질시켜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의 생활기반 그 자체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환경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환경에 대한 기본자세를 일방적인 소모, 파괴에서 적정관리, 보전, 공생에의 태도로

전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물·공기등 환경자체도 유한 (scarce) 하고 소모될 (exhaustible) 자원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학자나 법학자, 환경학자들 사이에 환경을 적절히 보전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적정 배분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물, 공기 등 환경자원을 새로운 有限資源으로 봄으로써 종래에 무한히 공급가능하고 대가의 지불없이 사용가능한 자유재로서서 파악하던 입장으로부터 한 개인의 환경오염행위는 타인들에게 깨끗한 환경자원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거나 오염을 처리해야 하는 등 부담을 가하게 되며 또한 깨끗한 환경을 영위하는 타인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外部效果 (Externality)를 가짐으로써 필연적으로 타인, 즉 사회에 대하여 비용 (Social cost) 을 부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파악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환경의 질의 저하는 국민후생의 측면에서 경제적 후생의 문제로 파악되며 환경의 질을 여하히 보전함으로써 國民厚生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비용을 여하히 환경자원의 사용자로 하여금 고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환경자원의 적정사용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깨끗한 환경의 질은 경제학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공공재는 시장 경제하에서는 적정히 공급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즉 排除不可能性 (Nonexcludability) 집합소비나 공급에 의한 이점 (Collective Consumption) 또는 불가분할성 (Indivisibility) 등의 이유와 나아가 개인소유권의 불확립으로 인한 가격형성의 불가등에 따르는 소위 시장경제의 공공재 공급 (쾌적한 환경의 질의 적정배분)의 실패인 것이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의 보전 및 이의 適正配分이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공공정책의 대상이 됨으로써 공공재 (쾌적한 환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면서 유한한 자원인 환경의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대두를 보게 된 것이다.

환경개념에 있어서 유한성이라고 하는 제한은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질서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이론구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시도로서 환경권개념의 대두를 보게 된 것이다.

종래의 경우 인간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有害物質등이 공중의 건강 또는 지역적인 자연환경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때등 가시적인 유해물질 (매연, 폐기물등)을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위생문제로서 취급하여 다분히 위생적인 색채가 강하였으며 그 지도원리도 전통적인 시민법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의 수요가 점차 증대하면서 1972

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에 관한 회의”에서 “人間環境宣言”이 선포되면서 비로소 환경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환경권이란 결국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라 하겠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경제학적 접근과 궤를 같이 한다. 즉 환경의 소재인 공기, 물, 日光, 자연경관등을 새로운 자원 (New Resource Elements)으로서 취급하여 공공소유의 대상으로 다룸으로써 근대시민법상 권리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소유권의 개념을 법리상 확인케 된 것이다. (로마법상의 「환경공유의 법리」 또는 미국법상 국가개념을 가미한 公共信託理論 (Public Trust Doctrine 등)

우리나라에서도 제5민주공화국 출발에 즈음하여 개정된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가·국민의 의무이외에 국민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좋은 환경의 확보를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 권리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일면을 지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나 환경권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이를 입법방침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구체적권리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입법방침규정설은 환경권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환경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에 한하여 효과적인 환경보전의 포괄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본다. 반면 법적권리설은 환경권을 생존권의 일종으로 보면서 법적권리임을 인정하려고 하며 헌법상의 부작위 확인소송청구권을 인정한다.

국내 학자의 주장은 환경권을 생존권과 같은 권리로서의 양면성을 가진다고 본다. 즉 환경권에 대한 침해배제청구권은 직접적권리이고 다만 環境保護請求權을 입법방침규정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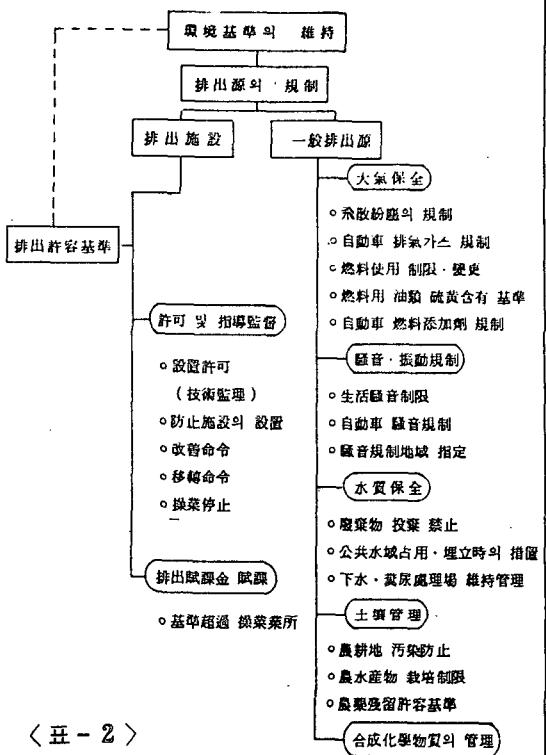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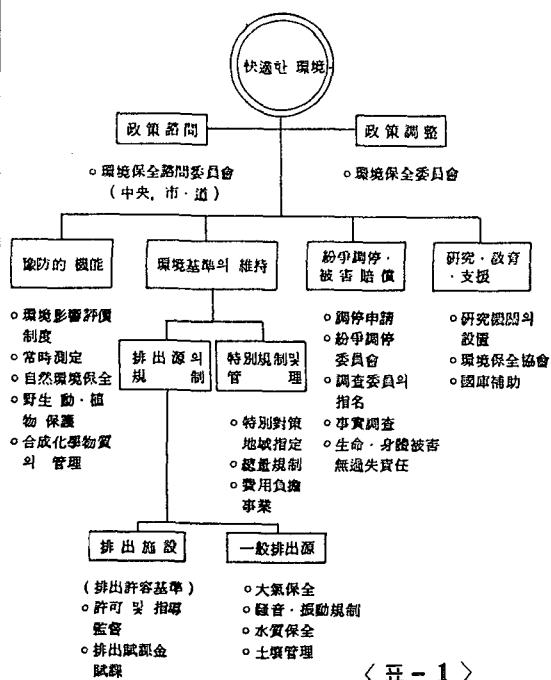
따라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법적 구제가 부정되지만 제33조의 환경적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2. 환경보전법의 지위 및 성격

우리나라에서도 '77년 종래의 공해방지법으로부터 발전된 환경보전법이 입법화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대책에의 국가적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헌법상 규정한 환경보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법령들중 기본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동법의 주요한 특질로는 법적성격이 소극적인 공해법으로부터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법으로 전환되고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절충주의로 바뀌었으며 기본정책규정의 결여로 아직도 집행방법과 함께 법적규제 중심적 방법이다.

환경보전법은 1977년 제정된 후 그간 3차례 개정이 있었고 1986년 12월 31일자로 제



4차 개정을 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을 민간인의 사업에까지 확대 (법제 5조)
- ② 미보호 야생동·식물의 보호규정 신설 (법률 9조의 2)
-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및 배출시설을 규정 (법제 15조 제 3항)
- ④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도 적용토록 함 (법제 19조의 2)
- ⑤ 자가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규모, 구역 또는 측정항목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법제 22조의 2)
- ⑥ 비산분진에 관한 규제조항을 신설 (법제 26조)

조의 2)

⑦ 제작 또는 수입 자동차배출농도의 시험검사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장치의 성능이 일정기간동안 배출가스 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결함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법제 30 조)

⑧ 자동차연료용 添加劑를 제조 또는 수입시 이를 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이를 첨가제의 사용을 규제 (법제 31 조)

⑨ 合成化學物質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신고토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동물질은 제조, 수입등을 금지토록 규정 (법제 42 조의 3) 한 것 등이다.

환경보전법의 내용을 체계도를 통해 보면 <표-1>, <표-2>와 같다.

3. 환경보전법의 일반적 내용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현행 환경보전법의 내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수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문과 대기, 소음·진동, 수질, 토양 및 산업폐기물분야와 같이 오염분야 별로 적용되는 2개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환경보전법의 일반적내용중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예방적 수단

(가) 環境影響評價

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란 환경의 이용, 개발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파괴등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다. 동제도는 그 연원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69)에 두고 있으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발생 가능한 자연·경제·사회적 환경에의 영향을 예측하고 회복 불가능한 환경의 파괴등의 확인과 이들을 감안한 사업

자체의 경제적 분석 (비용·효과분석) 으로 이루어진다.

종전까지는 평가대상을 법령에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개발로 한정하여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평가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법은 민간개발까지도 확대하고 민간개발의 주체도 개발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대상의 확대 이유는 오늘날 정유공장, 매립단지등 민간개발이 대형화하고 있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임.

(나) 환경기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목표로서의 기준이다. 이 기준은 특정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목표, 지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직접규제수단인 배출허용기준의 논리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환경보전법은 제 4 조에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기준의 개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전법은 제 4 조의 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이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환경조건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다) 常時測定 및 환경영향권별 관리

환경기준의 달성·유지가 환경행정의 목표라 한다면 환경오염도의 계속적인 파악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염도를 알고 있지 않으면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청

장은 대기오염의 영향권지역과 수질오염의 水系別 수역의 환경오염측정과 오염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6개의 환경지청을 두고 상시측정을 하고 있다. (법제 6조, 제 13조). 또한 시·도지사도 필요에 따라 당해 관할구역내의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 6조). 측정망의 설치는 환경오염실태 파악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원칙에 의해 그 위치가 정하여 지게 되므로 이 경우 환경청장, 시·도지사는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 6조의 3).

(라) 自然環境의 보전

인간이 생물체로 생존함에 필요한 자연환경은 그 자체 정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속의 생물체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자연환경의 자동조절능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영위를 위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은 종국에는 자연환경으로 하여금 정화능력 내지는 자동조절능력을 상실케 하여 그 오염된 자연환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물체로서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한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의 보전은 환경보전의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다. 환경청장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생물의 생육환경 또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제 9조 제 1항) 특별히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환경청장은 그 지역중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을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제 9조 제 3항)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마) 야생동물의 보호

1) 규정신설 이유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식물이 최근 무분별한濫獲으로 상당수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바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이들 야생동·식물의 보호는 시급한 과제임.

○ 미보호 야생동·식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개체수가 많아 먹이연쇄의 생산자 또는 1차 소비자로서 토양, 산림 고등동물에의 영향이 지대하여 자연생태계 안정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야생동·식물의 약효성·상품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농작물 및 가축의 품종개량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의 야생동·식물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태임.

○ 국제적인 야생동·식물의 趨勢에 부응하고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수출상대국의 통관거부 또는 압수를 방지할 수 있음.

○ 뱀가죽등의 수입에 의한 완제품 수출시 CITES 가입국인 상대국(수입국)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요구

2) 신설조항내용(생략)

(2)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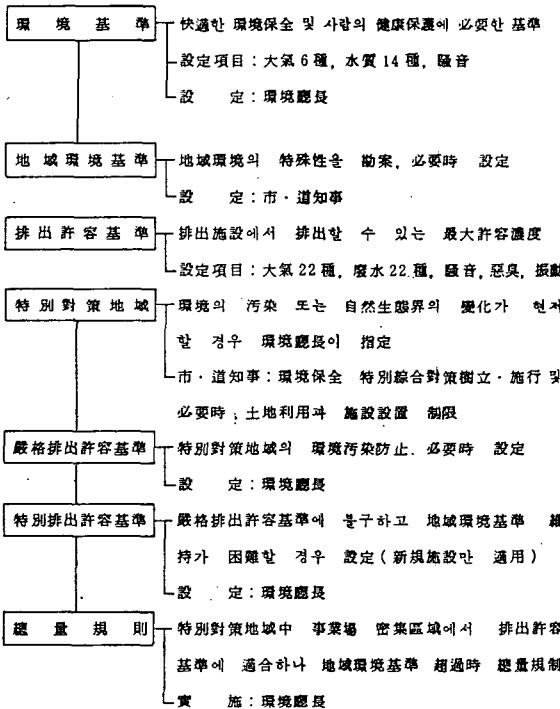
(가) 排出許容基準 및 배출시설의 설치규제

1) 배출허용기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수단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배출허용기준이다.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치 또는 최대허용농도를 말한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두 기준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행정목표로서의 환경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나 연혁적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설

정제도가 먼저 채택되었다. 환경보전법은 제14조에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 및 기계, 기구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 규칙(별표7)에서는 가스·分塵·매연·소음·악취 및 폐수에 대하여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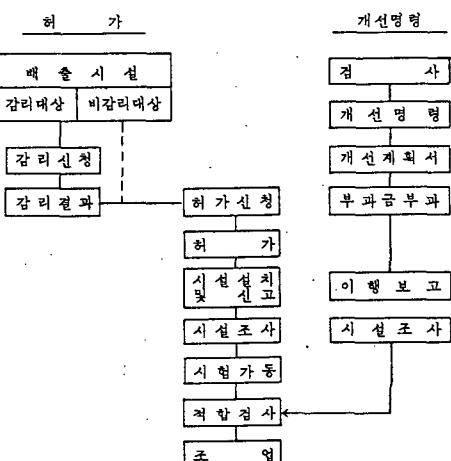


2) 배출시설의 허가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수질·토양을 오염하거나 소음·진동·악취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施設物·機械·器具 기타 물체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법제2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법제15조) 함으로써 배출시설의 설치시부터 환경보전법의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허가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판정받기 전에는 조업행위를 할 수 없다. (법제16조 사용개시의 신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66조)

참고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와 방지시설 설치

1) 기술검토와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15조의2).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받고자 할 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허가권자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생산시설 자체 또는 생산공정이며 그 공정의 차이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므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공정의 적격성, 방지시설 및 운전관리에 관한 종합적 기술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기술검토 및 방지시설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청에 기술감리단을 두고 (법제 15 조의 4) 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2)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 및 공동방지시설

사업자는 반드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제 15 조의 2) 방지시설 설치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등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방지시설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제 15 조의 2 제 1 항) 또한 공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당해 오염물질등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법제 15 조의 3)

(다)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총량규제

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규제 (배출허용기준)는 농도규제에 의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기준의 유지에 한계가 있어 오염물질의 총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오염물질의 총량적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법제 7 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법제 26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을 두어 총량규제,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의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배출시설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라) 排出賦課金制度

1) 排出賦課金制度의 개선

가) 근 거

○ 법 제 19 조의 2 :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종전제도의 문제점

- 賦課金 산정기간의 시점 및 종점 불합리
 - 시점 : 실제위반일인 검체일이 아닌 개선명령일
 - 종점 : 고의성 비정상가동차도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 서상 완료일
- 고장·수리등 분기폐한 비정상가동과 고의성 비정상가동의 회일관리
- 자진신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행정력 낭비 (적발위주의 행정)
고의성비정상가동자의 부과금제도 적용초래
- 부과금 부담의 불공평
 - 고의성비정상가동자는 개선명령 즉시 개선완료 보고 (사실상 개선 할 것이 없으므로) 를 할 수 있으므로 부과금 소액납부
 - 불가피한 비정상가동과 고의성 비정상 가동을 선별관리하지 않는데서 오는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 직접 규제조항의 사문화
 - 자신신고제도가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허가취소나 행정별등 직접 규제적용 곤란

2) 개선내용

가) 차등관리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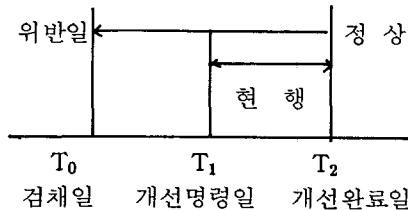
- 위반의 내용면에서 (령 17 조의 6 ~ 17 조의 16)
 - 성실신고제도 도입
 - 신고자와 무신고의 차등관리
- 위반의 빈도면에서 (령 17 조의 10)

~ 17 조의 12)

- 위반회수별 부과계수제도 도입
- 상급적 비정상가동자 차등관리

나) 부과금 起算時點개정

- ① 개정내역 : T_1 에서 T_0 로 소급



- ② 개정사유

실제 위반일인 검체일로부터 개선명령일까지의 부과금 적용 범위는 모순

- ③ 검체일로의 소급효과 분석

3)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본사항

- 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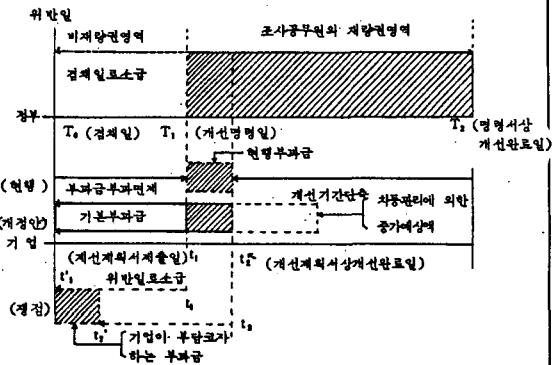
<표-3> 부과대상 오염물질

분야별	오염물질
대기분야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粉塵, 악취
수질분야	BOD 또는 COD, 浮遊物質,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연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 동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나) 賦課金 算定方法

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염물질	산정공식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BOD 또는 COD, 부유물질 및 특정유해물질 (Cd, CN, P, Pb, Cr ⁶⁺ , As, Hg, PCB, Cu, Cr), 크롬 및 그 화합물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악취	배출물질 1,000m ³ 당 부과금액 × 배출물질량 ×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 제도에 있어서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표-3>에서와 같이 대기분야에 아황산가스 등 4종, 수질분야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등 13종이 있으며, 악취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4) 배출부과금의 활용

정수된 부과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 이 아니라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이 된다. 환경오염방지 기금은 배출부과금, 정부출손금, 기타이익금등으로 조성되며 동 기금은 각종 환경 오염방지사업, 장기저리의 공해방지시설자금지원금등에 사용케 된다.

(마) 費用負擔制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원인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 43조~제 46조). 이 원인자의 비용부담제도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공법상의 부담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의 범주로 이해된다. 비용부담의 대상은 환경보전법상 사업자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로서 공단등의 조성시 공동방지시설의 성격을 갖는 공단폐수처리시설을 위한 분담금과 구별된다.

I(3) 사업자의 의무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보전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사업자는 조업행위를 할 때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 16조의 2). 또한 환경청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 16조의 제 2항). 정상운영 여부의 판단은 그 때 그때 판단할 사항이나 기본적 판단기준은 배

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와 오염물질의 처리 감소여부가 될 것이다.

(나) 자가측정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자가측정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제 22조) 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고 시설의正常運營 또는 개선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 배출시설 관리인채용 신고 및 감독

○ 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배출시설 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 23조).

○ 사업자는 배출시설 관리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등 배출시설의 관리상황을 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관리인이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법 제 23조 제 22항)는 조항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관리인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사업자 책임을 규정하였다.

(라) 기타 신고·보고·지시이행등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배출시설의 양도 또는 상속시의 신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당해시설에의 출입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금지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자의 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4) 규제확보의 수단

(가) 개선명령 (법 제 17조)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등 조치 미이행시

(나) 操業停止 (법 제 18조)

-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후 배출허용

기준 단속 초과시

- 국민보건상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한 경우

(다) 이전명령

- 당해 사업장 위치에서 개선명령을 이행 할 수 없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라) 허가의 취소 (법 제 20 조)

- 환경보전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마)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법제 21 조)

- 무허가 배출시설

(바) 行政罰

위에서 설명한 명령등 행정처분 불이행 및 사업자의 업무불이행에 대하여 벌금을 규정 (법 제 66 조~제 70 조)하고 있다. 더우기 제 70 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범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을 확대한다. (법 제 69 조의 2)

(사) 비용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의 강제징수

비용부담계획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원인자 부담금이나 배출부과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법 제 19 조의 2 제 4 항, 제 46 항).

(5) 피해의 구제 및 분쟁조정

오염문제가 다양화, 심각화함에 따라 피해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염피해를 들러싼 분쟁 역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확보를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규정(법 제 53 조~제 59 조). 생명·신체에 대한 오염피해에 관하여는 무과실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 60 조)

(6) 청문제도의 도입

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 제 62 조의 4)

- ①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
- ② 측정대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 ③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이 규정의 신설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한 환경행정행위를 하려는 배려가 있다.

4. 환경보전법의 오염분야별 규제내용

(1) 대기오염의 규제

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별로 별도의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 연료사용의 규제 (법 제 27 조) 및 연료용 유류의 유황함유기준의 설정 (법 제 27 조의 2) 등이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저유황유 공급 및 사용명령을 통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이동오염원인 자동차 및 중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자동차 종류별로 정하도록 하고 (법 제 28 조)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법 제 29 조) 및 납등 자동차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법 제 31 조) 등을 정하고 있다.

(2) 소음·진동·악취의 규제

소음·진동 및 악취에 대하여도 소음규제지역의 지정 (법 제 33 조) 및 동 지역에서의 소음규제기준의 설정 (법 제 34 조) 등 규정과 자동차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소음규제지역내에서의 소음기준위반차량에 대한 규제 (법 제 34 조의 2)를 하는 한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적합한 소각시설이 없이는 고무, 괴력, 합성수지 또는 폐유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다. (법 제 32 조). 또한 생활소음의 제한 (법 제 32 조의 2) 규정을 둘으로써 주

거지역등에서 배출시설로부터의 소음이외에 확성기에 의한 소음, 사업장의 작업소음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소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수질오염의 규제

(가) 投棄 및 毀損등의 금지 및 제거명령

적당한 사유없이는 공공수역에 특정유해물질,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오염되거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오염물질의 배출자와 접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 (법 제 37조)。

(나) 공공수역의 접유, 매립에 의한 오염금지

해안, 하천, 湖沼등 공공수역을 접유, 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수역의 접유, 매립의 허가 및 인가를 하는 관청은 공공수역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附款을 붙이게 한다. (법 제 38조)

(4) 토양오염의 규제

(가) 투기금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정유해물질, 산업폐기물등을 산림에 투기하는 행위를 금한다. (법 제 37조)

(나) 농경지의 오염방지

특별대책지역내에 있어서는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경지, 초지의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농경지 (초지포함) 및 산림에 유입하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거나 복토, 삭토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 41조).

(다) 농약의 규제

환경청장은 수질, 토양, 농작물의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약의 잔류성 유독물질함유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에 위반한 농약제조자에 대해 제조의 금지, 변경, 제품의 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한다. (법 제 42조의 2)

(5) 합성화학물질의 규제 (규제조항 신설)

(가) 합성화학물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

○ 산업의 발달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제조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상의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어 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화학물질 특히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관리 기능이 미치지 않고 있어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상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음.

(나) 신설조항 (법 제 42조의 3)

○ 생 약

우리모두 환경보전

- 공장, 세차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깨끗이 정화합시다.
- 정화조는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청소합시다.
- 합성세제는 포장지의 표시에 따라 알맞게 사용합시다.
- 음식찌꺼기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따로 싸서 버립시다.
- 하천이나 빙터에 오물을 버리지 맙시다.
- 자연보호에 적극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을 이룩합시다.